
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곽규택·조승환·박지원
김용태·유상범·신성범
김상훈·강대식·배준영
강승규·조지연·강명구
서천호·최은석·서범수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,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폐교재산 활용 특례의 범위를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,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육·문화·체육시설 등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특히 필요함에도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교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·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,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

것임(안 제29조의2제1항).
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3.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4.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의2(폐교재산 활용의 특례)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(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1.·2. (생략) <신설> <신설>	제29조의2(폐교재산 활용의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.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